

구미시 통·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(안) 검토 보고서

1. 근거 - 지방자치법 제4조제 6 항

행정동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음.

※ 조례제정 78. 2.15 구미시통반설치조례 제102호(개정27회)

2. 목적 - 늘어나는 가구·인구수에 비례하여 통반을 적절히 확대조정함으로써,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.

3. 설치기준 - 조례 제3조

° 통 - 4 ~ 6개반

° 반 - 20 ~ 30가구(다만, 50가구를 초과 하는 범위내에서 자연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)

※ ———— 최고의 반 - 공단 2동 3통 ⇒ 24개반

————— 최소의 반 - 공단 1동 12통 ⇒ 2개반(가미전자, 오리온전기 2공장)

4. 조정(안) - 내역별첨 (상정안 19p)

- ° 통 - 221 $\Rightarrow$ 236 (증 15), 최다 증 : 도산동 9개통
- ° 반 - 1,558 $\Rightarrow$ 1,685 (증 127), 최다 증 : 도산동 55개반

5. 예산분석 - 증 17,580천원

- ° 현행 - 251,110천원(년)

□ 통장 : 월 80천원 $\times$ 221명 $\times$ 12월 = 212,160천원
□ 반장 : 년 25천원 $\times$ 1,558명 = 38,950천원

- ° 개정후 - 268,690천원(년)

□ 통장 : 월 80천원 $\times$ 236명 $\times$ 12월 = 226,560천원
□ 반장 : 년 25천원 $\times$ 1,685명 = 42,130천원

※ 회의 수당 1만원은 별도

< 검토 의견 >

- °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미시 통·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(안)는 적정하다고
사료됨

보고자 : 총무전문위원 김인종